

KB 손해보험지부 14 대 정·부위원장 선거 관리 지침

(2024년 11월 13일 시행, 11월 15일 개정)

1. 선거 운동 기본 지침

- (1) 선거운동은 입후보 등록 마감일 이후 2024년 11월 15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2024년 12월 11일(수)까지 할 수 있다. 가급적 선거 운동은 개별 조합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선거 운동 기간 내 합리적인 시간에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.
- (2) 입후보자 및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상호비방, 욕설, 유언비어 유포, 금품 및 향응제공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. 이러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해당 행위자는 선거규정 및 선거운동방법세칙에 의거 징계 조치한다.
- (3) 입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합동연설회 이외의 장소에서 홍보/연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. 또한 입후보자는 실내(사옥, 영업점, 외곽 포함)에서 마케팅, 후보자 단체 인사 등의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.
- (4) 입후보자는 사내·외 회의/교육/모임 등에 참가할 수 없다. (단, 경·조사는 예외로 한다.)
- (5) 입후보자와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 - 가. 근무시간 : 입후보자와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사내 부서를 선거와 관련하여 방문할 수 없다.
 - 나. 식사시간(점심,저녁) : 입후보자와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과 식사 등을 이유로 만날 수 없다.
 - 다. 상기 제외한 시간 : 입후보자는 실·내외에서 입후보자를 제외한 2인 이상과 동시에 만날 수 없다. 다만, 후보 추천 선거관리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이를 통지한 후 만날 수 있다.
- (6) 모든 홍보물 및 입장표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발표해야 하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의 대상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발표를 보류/취소할 수 있다.
- (7)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문자, 이메일, 동영상, 메신저, 쪽지, 팩스, SNS, ARS의 매체를 통하여 일시에 대량의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하여서는 안된다. 단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회까지 발송할 수 있다.
- (8) 입후보자는 전화, 문자 등 개별 노조원을 대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.
- (9) 입후보자는 선거 운동과 관련되지 않은 경비를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없다.

- (10)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기간 동안 사전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입후보 추천을 받아서는 안 된다. 후보 추천인 서명은 선거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 합계가 가급적 100 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(11) 각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기간 동안 본점 및 지점 등에서 후보자 이름/입후보 취지 등을 큰소리로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. 다만, 후보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개별 노조원에게 후보자의 이름/입후보 취지 등을 간단히 소개하는 행위는 예외로 한다.
- (12) 본 선거 관리 지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재/개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재/개정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지침의 재/개정시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그 변경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(13) 본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, 본 지침의 해석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2. 합동연설회 진행 지침

- (1) 연설시간 : 입후보자당 30 분 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. (선거규정 제 16 조) 각 입후보자당 아침 10 분, 점심 15 분, 저녁 15 분으로 한다.
(단, 입후보자를 제외하고 5 인 이하의 조합원이 모인 연설회의 경우 각 후보자 합의 하에 연설시간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)
- (2) 입후보자는 연설회 장소 또는 연설회 참석 대상 분회 또는 해당 분회가 소재한 사무실 등에 연설회 시작 시간으로부터 30 분 이내에만 출입할 수 있다. (연설회 시간 08:30 인 경우 경우 08:00 분부터 입장 가능)
- (3) 연설회 종료 후에는 입후보자 전원은 해당 분회가 소재한 사무실/건물로부터 즉시 나와야 한다.
- (4) 연설회에서 입후보자 - 조합원 간 별도의 질문은 허용되지 않는다.
- (5) 연설회는 등록된 입후보자 전원이 동행하여야 한다. (단, 질병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)
- (6) 연설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 1 인 이상이 동행하여야 하며, 후보추천 선거관리위원회원은 참석하지 않는다. 단, 후보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연설회의 청중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한다.
- (7) 연설회 순서는 매일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그 시기와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. (후보자가 연설회 시작 시간 5 분이상 지연 도착할 경우, 연설회의 발언권을 회수 한다. 단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)

3. 인터넷 매체 사용 지침

- (1) 전자매체를 사용하는 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방법세칙 제 5 조(전자매체 사용)를

따른다.

- (2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합정사옥, 대구사옥, 대전사옥의 연설회 동영상은 노조게시판을 통해 게시하고, 노동조합 알림톡을 통하여 전 조합원에게 해당내용을 공지한다.
- (3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발생 시 전체 후보자의 연설회 동영상의 게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4. 공식 홍보 지침

- (1) 노조 게시판 홍보 3 회 및 인쇄물 홍보 1 회씩 홍보할 수 있다.

가. 인쇄물 홍보 : 2024년 11월 21일 오후 3시까지 각 입후보자는 인쇄물 홍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. 이 때 홍보물은 A4 8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내용 심의 후 지체 없이 홍보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한다.

나. 노조 게시판 홍보 : 11월 21일 / 11월 28일 / 12월 5일 오후 3시까지 홍보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해야 한다. 이 때 홍보물은 A4 2매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 내용 심의 후 지체 없이 홍보물을 조합원에게 배포한다.

다. 인쇄물 및 노조 게시판 홍보자료는 기한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이메일로만 접수해야 한다.

- (2) 노조 게시판 홍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조합 홈페이지 내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게재한다. 이 때 홍보물의 게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실행한다.
- (3) 각 입후보자의 노조 게시판 홍보물이 게재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홍보물 게시 사실 및 해당내용을 노동조합 알림톡 등으로 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.
- (4) 홍보물은 문자와 사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 (동영상, 플래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.)
- (5)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문제 발생시 전체 후보자의 홍보물 게시를 유보할 수 있다.
- (6) 각 입후보자가 홍보물 내용을 상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인쇄 홍보물 /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홍보를 하지 않을 수 있다. 이 경우,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해당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및 노동조합 알림톡으로 고지하여야 한다.

5.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침

- (1) 선거관리위원회는 선출직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 및 입후보자 측 선거관리위원 각 2인으로 구성된다.

- (2)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제발생 시 즉각적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및 진행을 위해 각 선거관리위원의 해당 업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(3) 그 외 사항은 노동조합 선거 규정에 의거 진행한다.

6. 선거규정 및 지침 위반 제소 및 처리 절차

- (1) 위반에 대한 접수는 각 후보 측 선거관리위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정 양식의 서면 또는 사내 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.
(단, 메일로 접수할 경우,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인 모두에게 발송해야 한다.)
- (2) 선거위반 접수 시, 접수일 익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(3) 제소 상정은 평일 17:00 까지 가능하며, 제소 심의 회의는 익일 개최한다.
단, 개최시간 및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며, 익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개최한다.
- (4) 제소 상정은 12 월 9 일(월) 17:00 에 마감한다.
- (5) 제소심의회의 시간은 1 안건 당 20 분을 초과할 수 없다.
- (6) 재제의 결정은 전체 선거관리위원 2/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,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.
- (7) 위반이 확정된 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 및 노동조합 알림톡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.
- (8) 선거운동방법 세칙 제 4 조, 제 5 조의 위반이 확정된 경우 제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 회 위반 : 경고(경고를 받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공지한다)
 - 2 회 위반 : 선거운동 전면금지(24 시간)
 - 3 회 위반 : 합동연설회 참석 제한(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불참 사유 공지)
 - 4 회 위반 : 후보자격 박탈
- (9) 당선 후에도 선거기간 중 4 회 이상 금지대상행위가 확인될 경우 당선자격을 박탈한다.